

## 이사회 규정

### 제 1 장 총칙

#### 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이사회的高效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 2 조 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# 제 3 조 (권한)

-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### 제 2 장 구성

#### 제 4 조 (구성)

이사회는 이사 전원(사외이사, 기타비상무이사 포함)으로 구성한다.

#### 제 5 조 (의장)

-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.
- 이사회 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이사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.

3. 이사회 의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, 대표이사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임시 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 **제 5 조의 2 (사외이사의 임기)**

사외이사는 6 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으며 이 회사 또는 계열회사 등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할 기간을 합산하여 9 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.

## **제 3 장 회의**

### **제 6 조 (종류)**

1.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2.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개최한다.
3.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### **제 7 조 (소집권자)**

1.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.
2. 각 이사는 이사회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 
이사회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### **제 8 조 (소집절차)**

1.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 일 전에 이를 각 이사에 우편, 전자우편,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.
2.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## 제 9 조 (결의방법)

1. 이사회는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일정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 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2.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3.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4. 사외이사는 필요 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5.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## 제 10 조 (부의사항)

1.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- ①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    - 1) 주주총회의 소집
    - 2) 영업보고서의 승인
    - 3) 재무제표의 승인
    - 4) 정관의 변경
    - 5) 자본의 감소
    - 6) 회사의 해산, 합병, 분할합병, 분할 및 회사의 해산 이후 영업의 계속
    - 7) 주식의 소각
    - 8)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
    - 9)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    - 10) (삭제)

- 11) 주식의 액면미달발행
- 12) (삭제)
- 13) 주식배당 결정
- 14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- 15) 이사의 보수
- 16) 상법 제 542 조의 9 에 따른 회사와 회사의 최대주주(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)와의 거래의 승인
- 17) 상법 제 542 조의 9 에 따른 회사와 회사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
- 18)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 및 보고할 의안

## ② 경영에 관한 사항

- 1)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
- 2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3) 이사회 의장의 선임 및 해임
- 4) 공동대표의 결정
- 5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- 6) 이사회 내 위원회(감사위원회 제외)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7) 이사회 내 위원회(감사위원회 제외)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
- 8) 이사회 내 위원회(감사위원회 제외)의 부의사항에 대한 결의
- 9)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
- 10) 등기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- 11) 지점, 공장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
- 12) 간이주식교환,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주식교환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
- 13)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
- 14)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1% 이상이면서 전체 지분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, 다른 회사와의 중요한 합작 또는 동업계약의 체결

- 15) 전체 지분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지분을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1% 이상을 처분하여 100 분의 50 미만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
- 16) (삭제)
- 17) 기업지배구조현장, 이사회 규정, 각 위원회 규정, 주요 사규의 제·개정 및 폐지
- 18)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, 준법통제기준의 제·개정 및 폐지
- 19)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

### ③ 재무에 관한 사항

(이하, 자산·자기자본·자산·매출·부채는 최근 사업연도말 사업보고서상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.)

- 1)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
- 2) 결손의 처분
- 3) 사채의 모집,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
- 4) 자기주식의 취득, 처분, 소각에 관한 사항
- 5) 준비금의 자본전입
- 6)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의 2.5% 이상의 유무형자산 취득 및 처분
- 7)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2.5% 이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
- 8)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신규시설투자, 시설증설, 별도 공장의 신설
- 9)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차입
- 10) 양수 또는 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 총액의 10% 이상인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
- 11) 양수 또는 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매출액의 10% 이상인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
- 12) 영업의 양수로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부채의 10% 이상인 영업의 양수
- 13)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 2.5%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, 채무인수, 면제

- 14)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 2.5% 이상의 타인에 대한 금전의 가지급, 금전대여 또는 유가증권의 대여 (단 종업원 또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의 경우는 제외)
- 15)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하거나, 동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동법 제 26 조 및 동시행령 제 33 조에서 정한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
- 16) 계열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안건 중 회사의 자산에 300 억원 이상의 영향을 주는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

④ 이사에 관한 사항

- 1) 상법 제 398 조에 따른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
- 2) 타 회사의 임원 겸임
- 3) 이사의 회사 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

⑤ 기타

- 1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
- 2)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2.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- ②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
- ③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실태
- ④ 이사회 및 위원회 평가 결과
- ⑤ 계열회사의 투자활동 중 거래금액이 300 억원 이상인 투자활동(타법인 출자 및 출자지분의 처분, 자산의 취득 및 매각, 신규시설 투자, 시설 증설 등)

⑥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**제 11 조 (이사회 내 위원회)**

1.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2.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  - ①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 - ②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 - ③ 이사회 의장의 선임 및 해임
  - ④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 - ⑤ 기타 법령 및 정관에서 이사회가 직접 결정하도록 정하는 사항
3. 위원회는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다만,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4.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5.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**제 12 조 (관계인의 출석)**

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**제 13 조 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)**

1.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
2. 제 1 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## **제 14 조 (의사록)**

1.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2. 의사록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3.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4. 회사는 제 3 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
## **제 15 조 (간사)**

1.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.
2. 간사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.

## **부칙**

- 이 규정은 2004 년 2 월 2 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2007 년 5 월 11 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2008 년 3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2011 년 3 월 4 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2014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2015 년 12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2020 년 2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2020 년 3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2021 년 1 월 12 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2023 년 5 월 11 일부터 시행한다.



이 규정은 2024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.